

1. 개정이유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시, 경찰서(시도경찰청)에서는 소지허가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이력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16의2 (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제6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별표 16의2 제7호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유내용’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근거 법조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등을 추가 (안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별표 16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	----------------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통보)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② (현행과 같음)				
[별표16의2] <u>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u> 1. ~ 6. (생략) <u><신설></u>	[별표16의2] <u>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u> 1. ~ 6. (현행과 같음)				
	<table><tr><td>7.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사장</td><td>마약·대마·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 독, 정신질환 또 는 정신 발육 지연, 뇌전증 으로 인해 요 양급여를 지 급받은 사람 에 대한 자료</td><td>「국민 건강보 험법」 제47조</td><td></td></tr></table>	7.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사장	마약·대마·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 독, 정신질환 또 는 정신 발육 지연, 뇌전증 으로 인해 요 양급여를 지 급받은 사람 에 대한 자료	「국민 건강보 험법」 제47조	
7.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사장	마약·대마·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 독, 정신질환 또 는 정신 발육 지연, 뇌전증 으로 인해 요 양급여를 지 급받은 사람 에 대한 자료	「국민 건강보 험법」 제47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생활질서과	
연 락 처	(02) 3150 - 1341